

국외유학휴직 신청서

신규(연장) [] 변경 []

인적사항	성 명		직 급(직 위)	
	부서명		생년월일	
	담당업무			
휴직 희망 기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 ※ 최초 유학휴직 이후, 휴직기간 연장은 2년 이내만 가능		
국외훈련 기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 ※ 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 제13조에 의하여 「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」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유학휴직을 인정하지 아니함		
※ 국외훈련 중이거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사람만 작성				
유학기관	기관명			
	주 소			
	이메일 / 전화번호			
유형	학위취득 [] (학사[] 석사[] 박사[]) / 어학연수 [] / 국외훈련 완수 []			
목적 ¹⁾				
훈련기관 타당성 ²⁾				
업무 관련성 ³⁾				
수학 계획 ⁴⁾				
활용 계획 ⁵⁾				
(변경시) 변경 사유 ⁶⁾				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유학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. []

「공무원 임용규칙」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외유학휴직을 변경 신청하고자 합니다. []

년 월 일

신청자 성 명 : 인 (서명)

작성요령

- 1) 목적 : 국외유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 및 국외유학 필요성
 - 2) 훈련기관 타당성 : 목적달성과 관련한 훈련기관의 적절성
 - 3) 업무 관련성 : 연구 주제가 업무와 어떻게 관련 되는지 기재
 - 4) 수학 계획 : 유학 기간 동안 학습 계획 기재
 - 5) 활용계획 : 유학휴직 복직 후 활용계획 기재
 - 6) (변경시) 변경사유 : 유학계획이나 유학기관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작성
- ※ 증빙자료 예시 : 입학허가서, 학사 일정표 등

<휴직을 목적 외 사용 시, 복직 및 징계사유에 해당 할 수 있음>

인사담당자 작성란	
승인 []	불승인 []
휴직 명령 기간 *휴직명령시 작성	년 월 일 ~ 년 월 일
실제 휴직 기간 *복직시 작성	년 월 일 ~ 년 월 일